산업통상자원부	보 도 자 료		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
보도 일시	2023. 1. 13.(금) 11:00 < 1.14.(토) 조간 >	배포 일시	2023. 1. 13.(금)
담당 부서	신통상전략지원관 디지털경제통상과	책임자	과 장 이창훈 (044-203-5630)
		담당자	사무관 이채원 (044-203-5631)

1.14일 「한-싱가포르 디지털동반자협정」 발효

- 양국 간 디지털 교역 확대 및 디지털 기술·비즈니스 협력 강화 기대 -

□ **산업통상자원부**(장관 이창양)는 **“한-싱가포르 디지털동반자협정”**(Korea-Singapore Digital Partnership Agreement, 이하 ‘한-싱 DPA’)이 발효를 위한 양국의 국내 절차를 마무리하여 **1.14일 발효**된다고 밝혔다.

○ 양측은 **지난해 11월 한-싱 DPA 서명식(11.21)** 이후 **국내 법적·절차적 요건을 완료하였음을 확인하는 서면 통보를 교환**하였으며, **협정문 내 발효 규정**에 따라 교환일로부터 30일 이후인 1.14일부터 발효되는 것이다.

※ 한-싱 DPA 제5조(발효) : 양 당사국이 발효에 필요한 법적 절차를 완료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 통보의 교환이 완료된 날로부터 30일째 되는 날에 발효

□ 한-싱 DPA 발효로 기존의 **한-싱가포르 FTA 제14장(전자상거래)**은 **한-싱 DPA 부속서 1(디지털경제)로 대체**되며,

○ **당초 4개 조항에 불과***하였던 양국 간 디지털 통상규범이 **총34개로 대폭 확대**되어, 양국 간 **전자상거래 및 디지털비즈니스 여건 개선**과 더불어 **디지털 신기술 분야 협력의 근거**가 마련된다.

* ▲정의, ▲범위, ▲서비스의 전자적공급, ▲디지털제품 등 4개 조항으로 실체적 의무 관련 조항은 1개 뿐(디지털제품)

<참고> 한-싱가포르 DPA 분야별 주요 조항

분야	주요 조항
전자상거래 원활화	전자적전송 무관세, 전자인증·전자서명, 전자송장, 전자지급, 종이서류 없는 무역, 특송화물 등
디지털 비즈니스활성화	디지털제품 비차별대우, 국경간 정보이전 원활화, 컴퓨터설비 현지화 요구금지, 소스코드 공개 요구금지, 인공지능(AI)·핀테크·디지털경제 표준 협력 등
온라인 소비자보호	개인정보 보호, 온라인소비자 보호, 스팸 메시지 규제, 사이버보안 등

□ **한-싱 DPA 협정문 국·영문본**과 **상세설명자료**는 산업통상자원부 FTA 홈페이지, **'FTA강국 코리아(www.fta.go.kr)'에서 확인 가능**하다.

□ 한편, 산업통상자원부는 한-싱 DPA 발효를 계기로 **관련 협회**와 함께 **관심 기업을 대상**으로 **한-싱 DPA 상세내용 및 기대효과**에 대한 **설명회를 진행**할 계획이며,

○ 작년 서명식 계기 체결한 **한국-싱가포르 디지털경제대화(Digital Economy Dialogue) MOU의 이행**을 위해, 싱가포르 측과 협의하여 **빠르면 1분기 중 제1차 디지털경제대화를 개최**하여, 비즈니스 관점에서 양국이 상호 win-win 할 수 있는 구체적인 **협력 프로젝트를 발굴**해나갈 예정이다.

붙임 : 한-싱가포르 DPA 주요 내용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
OPEN 출처표시
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붙임 **한-싱가포르 DPA 주요 내용**

□ 한-싱 DPA는 **전자적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국가간 교역에 대한 무역 규범과 디지털 신기술 분야에서의 협력 조항**을 균형있게 반영

○ 4개 조항에 불과하였던 기존 한-싱 FTA 전자상거래 챕터 대비 **규범 범위를 대폭 확대**하고, **AI, 핀테크, 디지털경제의 표준 협력** 등 양국이 **관심있는 협력 분야를 포함**

* 기존 한-싱가포르 FTA('06년 발효) 전자상거래 챕터는 ˙정의, ˙적용범위, ˙서비스의 전자적 공급, ˙디지털 제품 등 4개 조항으로 간략하게 구성

<참고> 한-싱가포르 DPA 분야별 주요 조항

분야	주요 조항
전자상거래 원활화	전자적전송 무관세, 전자인증·전자서명, 전자송장, 전자지급, 종이서류 없는 무역, 특송화물 등
디지털 비즈니스활성화	디지털제품 비차별대우, 국경간 정보이전 원활화, 컴퓨터설비 현지화 요구금지, 소스코드 공개 요구금지, 인공지능(AI)·핀테크·디지털경제 표준 협력 등
온라인 소비자보호	개인정보 보호, 온라인소비자 보호, 스팸 메시지 규제, 사이버보안 등

(전자상거래 원활화)

○ △**전자화된 무역문서**의 활용을 촉진하고, △**신속한 통관절차**를 보장하며, △**전자결제**, △**전자인증·서명**, △**전자송장** 등 **국경 간 무역 과정 전반을 전자화**하기 위한 다양한 협력 사항들을 규정한다.

○ 또한, △**콘텐츠를 포함한 전자적 전송에 대해 무관세**를 유지하고, △상대국의 **디지털제품**에 대해 자국의 제품과 불리하게 대우할 수 없도록 하여, **전자적 형식의 제품 및 콘텐츠의 자유로운 교역**을 가능하도록 한다.

(디지털 비즈니스 활성화)

○ △**개인정보를 포함**하여 **국경 간 자유로운 데이터 이전**을 보장하고, △상대국 영역에서의 사업수행을 조건으로 **컴퓨터 설비를**

자국내 두도록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여 자유로운 디지털 비즈니스 환경을 제공한다.

- 다만, **정당한 공공정책 목적달성**을 위한 정부의 조치는 예외적으로 인정한다.

○ 또한, ▵**소프트웨어의 핵심요소**인 **소스코드나 알고리즘**에 대해 이전·공개하도록 하거나, ▵**ICT 제품에 대해 특정 암호기법**을 사용하도록 요구할 수 없도록 하여 **기업의 영업비밀을 보호**하고, **새로운 무역기술장벽**이 도입되는 것을 방지한다.

○ 그 외 **디지털 분야 협력**으로 ▵**AI 윤리적 거버넌스 체계 개발,** ▵양국 **핀테크 기업 간 네트워크 확대**, ▵**디지털경제 분야 표준 개발**에 대한 **기술협력 및 공동연구** 등 협력을 증진하기로 하였다.

(온라인 소비자 보호)

○ 기업과 소비자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다지털 교역환경 조성을 위해, ▵**온라인 소비자 보호,** ▵**스팸메시지 규제,** ▵**개인정보 보호** 등에 대한 **국내법 체계를 도입, 유지**하고, **국경 간 발생하는 소비자 이익 침해**를 구제하는 데 **협력**하도록 한다.

○ 나아가, ▵**소비자의 인터넷 접근 권한을 보장**하고, ▵**사이버보안** 분야 자격 상호인정 등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.

(협정문 적용 범위)

○ 동 협정은 **전자적 수단에 의한 무역**에 영향을 미치거나, **전자적 수단으로 무역을 원활하게 하는** 당사국의 조치에 적용된다.

- 다만, **정부조달** 관련 사항과 **정부가 보유 또는 처리하는 정보**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.

○ 또한, **전자적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서비스의 공급**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에 대해서는, 한-싱가포르 FTA 서비스(제9장)·투자(제10장)·금융서비스(제12장)의 규정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.